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6		배포 일시	<b>2021. 7. 26.(월)</b> <b>총 4</b> 매(본문 2, 참고 2)	규제핵신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 판뉴딜	
담당 부서	항만운영과	담 당 자 • 과장 정규삼, 사무관 장기봉, 주무관 김영지 • ☎ (044)200-5770, 5773, 5774			
보도 일 시		2021년 7월 27일(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7. 27.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 종사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또한,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하편.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 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하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우물류국장은 "항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핫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라며,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월 5일 발표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PEN | ♣️ | 텍스트 네이너는 광광누리 출저표시의 소건에 따라 사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_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1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 □ 제정 목적

-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여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
- \* 항만운송사업자(하역사업자, 검수·검량·감정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항만 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용품공급업)

#### □ 주요 내용

- o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험성 제거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제5조, 제6조)
- **항만별로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근로자 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제7조제1항)
- **항만운송 참여자**는 소속 **항만운송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8조제1항)
- **하역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리청(해수부장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9조제1항)
  - \* (하역사) 사업장별로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관리청) 계획서 승인, 안전관리 이행여부 점검
- 관리청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항만 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감독요원으로 지정함 (제9조제5항, 제6항)
-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 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 시정조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10조)

## 참고 2

## 항만안전점검 사진



부산항 안전점검





울산항 안전점검